

신용장통일규칙(UCP)

오늘날의 국제교역, 즉 무역에 있어서 그 결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미 중세 로마시대에 비슷한 결제수단이 쓰여졌다고도 하며, 중세기에 지중해 · Asia Minor 및 Egypt에서 상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도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10세기 전후에 유대인들 및 북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Lombards 민족들이 고안해낸 수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다가 영국이 세계무역을 석권하던 16세기에는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어 그 제도가 거의 확립되기에 이르렀고, 세계 제1차대전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무역거래의 증대에 따라 신용장의 사용은 빈번하게 되었으나 그 해석에 대한 여러 의견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도 많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당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과 미국이 특히 심하였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통일적인 해석과 분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1920년 뉴욕은행상업신용장회의(New York Banker's Commercial Credit Conference)를 개최하여 '수출상업신용장에 관한 규칙' (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을 제정하였다. 이어 1922년에 미국인 수협회(American Acceptance Council)는 '상업신용장양식' (Commercial Credit Conference Form)을 제정하여 각 은행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1926년에는 미국신용장규약인 'Provisions Adopted by the New York Banker's Commercial Credit Conference'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신용장통일규칙의 필요성과 그 개정경과

이 비슷한 시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유리하게 각각의 규칙을 만들어 사용되었다. 그런데 신용장이란 한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 국가 대(對) 국가의 거래이므로 나라마다

다 규칙이 다르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일규칙의 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임무를 국제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¹⁾ 가 맡게 되었다. ICC는 1926년에 이 작업에 들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33년 5월 제7차 ICC 총회에서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상업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을 ICC Brochure No.82로 탄생시켰다. 그 내용은 총칙을 비롯하여 신용장의 성질, 책임, 서류, 문언의 해석 및 양도에 관하여 5개장 49개조로 구성되었다.

실로 7년의 각고 끝에 탄생된 신용장통일규칙이 있으나 이를 채택한 국가는 10여개 국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미국은 참조규정을 붙이는 조건으로 수락했으며 신용장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영연방 제국이 이를 채택하지 않아 범세계적인 통일규칙이 되지 못하였다.

그 후 신관행이 생겨났거나 관행에 변경되어 그 개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1939년 3월 파리회의에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951년에 1차 개정되어 Brochure No.151로 공포되었고 195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1차 개정규칙은 적용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하여 또다시 개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1962년 11월에 Brochure No.292로 제2차 개정규칙이 채택되었으며, 이 때 명칭을 영어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종래의 명칭에서 'Commercial'을 삭제하여 현재의 명칭인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약칭 UCP)가 되었다. 2차 개정 전에는 은행중심의 규칙을 면치 못하였으나 2차 개정 규칙은 신용장당사자 중에서 은행이 아닌 개설의뢰인과 수의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역당사자에게도 필요한 규칙이 되었고, 이제 이 규칙은 국제법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관습법에 가까워져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규칙이 된 것이다.

1)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무역의 개선, 거래관습과 법제의 국제적 통일, 상거래에 관한 국제분쟁의 조정 및 각국의 사업단체와 실업가의 연락체육 등을 목적으로 1920년에 설립한 민간경제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51년에 가입하였고, 1952년 2월에 국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UN의 A급 자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ICC가 제정한 국제규칙에는 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복합운송증권규칙 등이 있다.

그 후 컨테이너 운송을 반영하기 위해 1973년에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제5차에 걸쳐 개정됐다.

UCP의 제정 및 개정 290

구 분	연 도	번 호
제 정	1933년	Brochure No. 82
제1차 개정	1951년	Brochure No. 151
제2차 개정	1962년	Brochure No. 222
제3차 개정	1974년	Publication No. 290
제4차 개정	1983년	Publication No. 400
제5차 개정	1993년	Publication No. 500

수입대금결제 문제로 신용장제도 탄생

이에 따라 현재에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어려운 신용장이란 것이 사용되고 통일규칙이 사용되게 되었을까? 국내거래는 결제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국제거래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국제거래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므로 현금거래의 경우에도 상품의 수수와 대금결제에 있어서 시간적 간격이 개재하게 되며,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무역의 결제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송금(remittances), △D/P・D/A, △신용장(L/C) 등이 바로 그것이다.

송금에는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이 있는데, 사전송금은 수입상이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수출상은 유리하지만 수입상은 불리하다. 반대로 사후송금은 수입상은 물품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상이 불리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인 D/P・D/A는 추심에 의하기 때문에 추심거래(collection)라고도 한다. D/P(Document against Payment)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지의 자기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만 선적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도 조건이라고 하며, 반대로 인수도 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은 수출

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지급 환어음을 자기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다시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이 때 수입상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선적서류는 그냥 수입상에게 넘겨지므로 수입상은 그 서류상의 물품을 매각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은행에 대금을 갚게 되는 조건이므로 이것은 순수 외상거래이며, 추심은행은 중간에서 서비스의 편리만 보아주게 된다. 이때 수입상이 D/P인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 D/A인 경우 인수를 하고 만기에 지급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수입상이 지급하지 않거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D/P・D/A 역시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2가지 방법의 불안정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 곧 신용장(L/C)이다. 송금이나 D/P D/A의 결점은 주로 수입상의 신용 때문에 파생되는 것으로 어떠한 결제방식이든 수입상의 신용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을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고 신용이 있는 제3자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곧 L/C이다. 즉,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인 은행이 지급한다면 수출상에게 위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것이 신용장이며, 이는 특정은행이 수입상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 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 주는 금융수단이다.

UCP500 제30조, 포워더 발행서류 수리요건 규정

이러한 신용장의 해석기준을 마련한 것이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이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모두 4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은 제23조에서부터 제33조까지이며, 프레이트 포워더와 관련되는 조항은 제23조(해상선하증권), 제26조(복합운송서류), 제27조(항공운송서류), 제30조(프레이트포워더가 발행한 운송서류) 등이다. 특히, 제30조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발행한 운송서류(선하증권)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